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2287-10

2024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일러두기	2
세금이야기	4
사업자등록 안내	6
주요 세목별 납세방법과 납기일	9

농사를 지어 돈을 벌었다면, 소득과 세금

소득세	11
법인세	18

농지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과 세금

재산세	25
종합부동산세	27
상속세	30
증여세	32

축사를 취득하고 면사무소에 신고한다면, 거래와 세금

취득세	35
등록면허세	38
인지세	41

하우스 막걸리를 만들어서 판다면, 소비와 세금

부가가치세	44
주세	56

그 밖의 세금

농어촌특별세	59
주민세	60

2024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일러두기

세금은 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농업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농업인이 무슨 세금을 내나?”라고 오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업인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농업도 다른 산업처럼 세금을 내는 것이 있고, 감면 또는 면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업분야에 다양한 세금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감면 사항 외에도 세금 부과 전반에 대한 우리 농업 관계자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책자는 과세 대상에 따라 소득·재산·거래·소비·기타로 구분하여 주요 세금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소득세, 재산세 등 들어는 봤지만 실적용은 익숙하지 않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세금 부과 및 감면 방식을 그림과 예시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쉽게 펴 볼 수 있도록 한손에 잡히는 소책자로 발간하여 자세한 사항은 일일이 실지 못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 및 세무상담은 해당 세무서, 국세청 또는 시·군·구 민원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

중앙정부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금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자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지방세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세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요용어

과세표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가액(또는 수량)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액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일정 세액을 공제하는 것
※ 소득공제 : 소득세 결정 시 종합소득에서 일정 소득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계산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세금 감면액을 제하여 결정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

납부세액 결정세액에서 더 내야할 세금(가산세)을 더하고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제하여 납부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세금액

비 과 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납세 신고의무 없음
(= 과세대상에서 제외)
※ 비과세소득 : 소득세 결정 시 종합소득에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과세표준 계산

감 면 산출세액에서 일정비율(주로 25~100%) 경감하는 것

면 제 산출된 결정세액을 100% 감면하는 것

세무상담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상담센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nts.go.kr**



농업인 나보통 씨의 하루로 엿보는 세금이야기

평생 정직하게 농사만 지어온 나보통 씨. 세금 관련 서류와 영수증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세금 용어들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세금 계산은 또 어떻게 하는지. 무엇보다 세금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똑똑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처럼 세금은 우리의 생활 곳곳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책자에서는 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농업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후계농 나특별 사장님의 사업자등록 안내

농업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결제·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농업인(개인사업자)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법인사업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자는 연 1회 수입금액 명세 등을 포함한 사업자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1부(금자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의 경우 등)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

- 2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
-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 여부 확인

축산업, 축산물 가공업 등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작물재배업, 축산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민박, 음식물 판매 등 과세대상 사업을 하거나 면세사업과 과세대상 사업을 겸하는 경우 과세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나 일반법인인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인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사업자인 경우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제조업, 도매업 등) 일반과세자로 등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요 세목별 납세방법과 납기일

국세

세목	납세방법	납기일	비고
소득세	신고납부	익년 5.1~5.31(기간) 단,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 예정신고	지방소득세 포함
상속세	신고납부 정부결정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납부 정부결정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예정신고기한 : 4.25, 10.25 확정신고기한 : 7.25, 익년 1.25	간이과세자 • 연1회신고 (익년 1.25) • 예정고지납부 (7.25)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 (신고납부도 가능)	12.1~12.15	농특세 포함

※ 상속세·증여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정부 과세관청에서 결정하여 세액이 확정됩니다.

지방세

세목	납세방법	납기일	비고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등기·등록을 할 때	지방교육세 포함
재산세	부과고지	토지분 : 9.16~9.30	지방교육세, 재산세 과세특례분 포함
		건물분 : 7.16~7.31	지방교육세, 재산세 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포함

농사를 지어 돈을 벌었다면,

소득과 세금

소득세

법인세

김다해 씨는 농사를 지으면서 농산물 판매대금을 챙기고 은행에 돈도 예치하였으며 소속된 영농조합법인에 낸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한꺼번에 생겨서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렇듯 개인과 법인은 1년간의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개인이 내는 세금, 소득세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종합과세(모아서 걷고)**, **분리과세(나누어 걷고)**, **분류과세(따로 걷는다)**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종합과세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비롯하여 분리과세하지 않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 소득세를 결정합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종합과세 계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 - 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 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소득세 결정액**

세율 (2024)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억 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 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별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합니다.

-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율 14%)
- 연금소득, 기타소득(원고료, 복권당첨금 등)은 별도 세율표에 따라 원천징수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소득원천에 따라 별도로 소득을 계산 합니다.

소득세 이렇게 헹가저

소득공제 + 세액공제 + 비과세 = 소득세 감면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등

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

비 과 세 : 식량작물재배업 농업소득, 재형저축 이자소득, 1개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상금보조금 소득 등

농업분야 소득세

1. 사업소득



- + 수입 과세기간에 벌어들인 총 수입
- 경비 원료의 매입가격, 매입 부대비용, 판매 부대비용 등

① 농업인이 농사지어 얻은 농업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같이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합니다. 다만,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필요경비 계산

有 회계 장부를 작성한 경우 장부 /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

-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농업인은 간편장부대상자, 3억원 이상인 농업인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생각해낸 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장부입니다.
- ※ 복식부기는 일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전문적인 회계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無 장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 추계결정을 통해 계산

-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인 농업인은 단순경비율 적용, 6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기준경비율 적용
- ※ 농업분야 단순경비율 : 축산업 88-97.2%, 채소·기타작물재배업 93.5%
- ※ 농업분야 기준경비율 : 축산업 5.4-9.8%, 채소·기타작물재배업 4.5-9.0%

②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③ 비과세 하는 농업소득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작물재배업 소득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커피 등), 기타 작물재배업(인삼 등), 시설작물재배업(콩나물 등)

Q 경북 영천에서 사과와 복숭아를 재배하는 전업농입니다. 다른 수입은 없고, 작성한 장부를 보니 2020년도 매출액이 12억원, 필요경비는 10억 8천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A 사과, 복숭아는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매출액 12억원 중 2억원이 과세대상 이므로 소득금액(12억원-10억8천만원=1억2천만원)의 2/12에 해당하는 2천만원이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농가부업소득

- 민박, 음식물 판매, 전통차 제조,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업 등을 합산하여 연 3천만원 이하 소득

Q 충남 당진에서 민박을 겸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민박 운영으로 연간 3천만원의 수입, 경비로 1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소득세는 얼마입니까?
(다른 농가부업활동은 하지 않음)

A 소득(수입 - 경비 =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농가 부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 전액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납부 세액이 없습니다.

- 농가부업규모에 해당하는 범위의 축산업(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오리 15,000마리 등)

그 밖에 비과세되는 소득

- 전통주 제조소득(농어촌지역에서 제조한 연 1,200만원 이하 소득)
-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소득(논·밭 임대 소득 등)
- 산림소득(5년 이상 조림된 임지의 임목 벌채 등 연 600만원 이하 소득)

구분	세부사항	과세여부
작물 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과세제외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비과세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기타 작물재배업	
시설 작물재배업		
축산업		농가부업규모 외 초과소득 3천만원 이하 비과세
기타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과세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④ 작물재배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인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를 15~30% 감면(~25년) 받습니다.

⑤ 농공단지 입주기업(개인사업자)의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50% 감면(~25년) 됩니다.

i 잠깐!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으로 농업 생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농업인도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3년 소득세법 개정)

2.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를 통해 농업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25년), 농협 예탁금 이자소득(3천만원 이하 예탁금, ~'25년)

Q 세종농협 조합원이고, 이곳에 1천만원을 1년간 정기예치 하였습니다. 예금을 해지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얼마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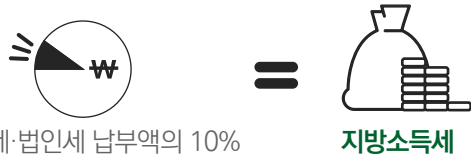
A 조합원이 지역농협에 예금한 경우이므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비과세예탁금), 조합원의 경우 농특세도 면제되므로 납부 세액이 없습니다.

배당소득 비과세

농협 출자금 배당소득(2천만원 이하, ~'25년),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 전액 및 기타 소득 중 일부(~'26년),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전액 및 기타 소득 중 일부(~'26년)

3. 지방소득세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의무자의 소득에 부과합니다.



농·축협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25년)

조합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를 인정하여 생산자단체인 조합의 세금 업무 편의성을 높입니다.

4. 양도소득

자산을 양도(매도·교환·현물출자)하여 얻은 소득에 부과합니다. 기본 세율은 종합과세 세율과 동일하나 자산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양도가액: 양도할 때 금액 / **취득가액**: 처음 취득할 때 금액

잠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자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많이하여 과세소득을 줄여줍니다.

양도소득 비과세

1세대 2주택이나 농어촌주택을 포함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25년)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이상 자경농지(일몰없음)·3년 이상 자경한 경영이양직불 대상 농지(~'26년)·축사용지(~'25년) 양도시, 자경농지 대토 시(일몰없음), 농업법인에 농지 현물출자 시 100% 감면(~'26년), 농업법인에 농지 이외 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26년)합니다.

※ **이월과세**: 부동산 소유권이 법인으로 이전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하여, 양도한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받은 법인이 추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내도록 과세

잠깐!

농지에서의 지속적인 영농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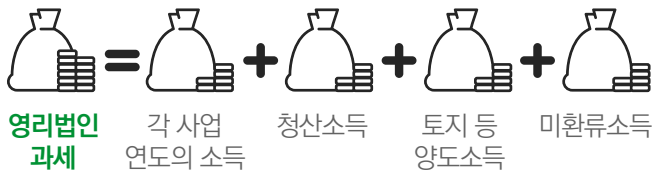
법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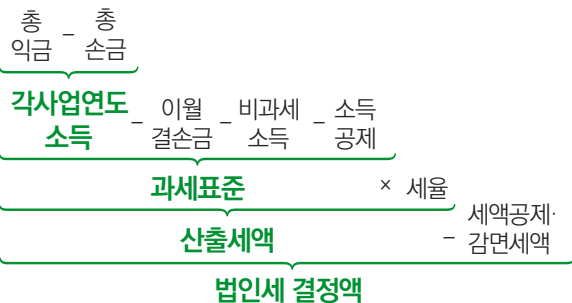
법인이 내는 세금, 법인세

법인세란?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 계산



세율(2024)

구분	과세표준	세율
일반법인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천8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37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1%)
	3,000억원 초과	625억 8천만원 +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조합법인 (농협 등)	2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9%
	20억원 초과	1억 8,000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

각사업연도소득

$$\text{총익금} - \text{총손금} = \text{각사업연도소득}$$

$$\begin{aligned}
 & = \text{당기순손익} + \text{익금산입} \cdot \text{손금불산입} \\
 & \quad - \text{손금산입} \cdot \text{익금불산입}
 \end{aligned}$$

※ **익금**: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자본 또는 출자 납입 제외)
 ※ **손금**: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 처분 제외)
 ※ **손익**: 이익과 손실 / 산입: 셈하여 넣음

- 15년내 발생한 이월결손금 인정(결손금소급공제 적용받거나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으로 총당된 것 제외)

※ **이월결손금**: 기업의 경영활동결과 순자산 감소가 생겼을 때 당해연도 준비금으로 처리하지 못해 이월한 결손금

- 농축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당기순이익 과세)

• 일반적인 과세표준이 아닌, 법인의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일부 세무조정(기부금, 접대비, 업무무관비용, 퇴직급여 총당금 등)만을 거쳐 과세표준 계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의 일정금액을 손금에 산입 가능

- **산입 한도:** 기부금 세무조정을 반영하기 전 소득의 10%(일반기부금), 50%(특례기부금)
- 접대비, 과다경비(상여금, 퇴직급여, 퇴직보험료 한도 외) 등도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하나 한도초과 지출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
- ※ 접대비는 기본 연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추가 한도 적용

청산소득

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등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의 남은 재산 가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할 때 또는 합병(분할)대가가 자기자본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

각사업소득과는 별도로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일정 세율(10~40%)로 과세합니다.

법인세 감면은 이렇게 챙기자!

세액공제 + 비과세 소득 = 법인세 감면

-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 **비과세 소득:** 공익신탁재산 소득 등

농업분야 법인세

농업법인

농업법인이 농업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개인자격이든 법인자격이든 농사를 짓는다면 크게 다르지 않게 법인화된 농업소득에 대해서도 농업인 소득세와 유사한 감면혜택을 드립니다.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26년)

구분	감면 한도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법인세 전액 면제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조합원당 연간 6억원 / 수입금액) × 소득금액 까지 법인세 면제
그 외 소득	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법인세 면제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26년)

구분	감면 한도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법인세 전액 면제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연간 50억원 / 수입금액) × 소득금액까지 법인세 면제
그 외 소득	최초소득발생 연도로부터 5년간 법인세 50%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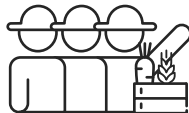
*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

농협

농협 조합·중앙회·지주·자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은 농협의 비용을 절감합니다. 이로써 농업인을 위한 경제사업은 물론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협의 비용을 절감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지원

- 조합 과세표준 특례와 낮은 세율 적용

- 법인의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일부 세무조정만을 거쳐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9~12%)

Q 우리 농협에 2023년 다음과 같은 세전손익과 세무조정이 발생하였습니다.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얼마입니까?

(세전손익 30억원, 접대비 한도초과 1억원, 기부금 한도초과 1억원,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 1억원으로 가정)

A 이 농협의 과세표준은 33억원(세전손익 30억원 + 손금 불산입 1억원 + 1억원 + 1억원)이므로(20억원 × 9%) + (13억원 × 12%) = 3억3,600만원이 납부 세액입니다.

- 중앙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비영리법인이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모은 적립금입니다.
- ※ **손금산입** :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경제지주(자회사)의 농·축협 지도·지원사업 비용 손금 인정

일반기업

농업 관련 일반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일반기업



법인세 감면

- 중소기업

- 작물재배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법인세 15~30%가 감면됩니다.(~'25년)

Q 종업원이 10명인 일반 법인입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고구마를 재배하여 연간 매출액이 50억원입니다. 경비 등 손금이 총 48억원일 때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얼마입니까? (매출액이 총익금과 동일하고 다른 소득·비용은 없다고 가정)

A 고구마 소득 2억원(= 50억원 - 48억원)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은 1,800만원(=2억원× 9%)
종업원이 50명 미만이고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면 소기업에 해당하며, 수도권에서 작물재배업을 하는 경우
이므로 법인세가 20% 감면되어 이 회사의 납부세액은 1,440만원입니다.

- 농공단지 입주기업

- 농공단지(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5년간 50% 감면됩니다.(~'25년)
- ※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특산단지에서 벌어지는 공업과 서비스업을 말합니다.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신성장·원천기술 통합)

- 스마트팜 환경제어기기 연구개발비의 최대 30~40%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24년)

농지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과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상속 받은 이만석 씨. 그도 아버지처럼 농업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는 남다른 세금 상식을 발휘해 상속세는 물론 생전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자산에 대한 증여세, 토지나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빠짐없이 챙기는 편입니다. 이렇듯 재산을 보유하거나 상속·증여를 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재산에 대한 세금

재산세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는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계산

$$\text{시가표준액} \times \text{공정시장가액비율}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text{재산세 결정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토지 및 건축물 50~90%, 주택 40~80% 다만, 법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30%~70%)

세율 (2024)

- 토지**: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에 따라 0.07~4%
- 건축물**: 대상에 따라 0.25~4%
- 주택**: 과세표준에 따라 0.1~0.4%

농업분야 재산세

농지 저율 과세

-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는 낮은 세율(0.07%) 적용
- 세율 0.07% 적용(일반 토지 0.2%~)
-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제외(분리과세)

농업법인

-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50% 경감(~'26년)

Q 1ha에 3억원인 농지 10ha를 직접 경작하는 한 영농조합 법인이 납부해야 할 농지에 대한 재산세는 얼마입니까?

A 산출세액은 147만원(= 30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세율 0.07%)이나, 영농에 직접 사용하므로 50% 경감하여 납부세액은 73만5천원입니다.

농협, 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

농업인의 영농을 지원하는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각종 부동산과 시설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 농협

- 농협중앙회 농민교육용 부동산 재산세 25% 경감(~'26년)
-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재산세 면제(~'26년)
- 농협경제지주 구매·판매 사업용 등 부동산 재산세 25% 경감(~'26년)

- 농어촌공사

-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시설물 재산세 75% 경감(~'25년)
- 경영회생사업용 임대 부동산 재산세 50% 경감(~'25년)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 유통시설, 교육훈련시설 재산세 50% 경감(~'25년)

종합부동산세



고액 부동산(주택+토지)에 부과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세와는 별도로 고액의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보유 고액의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국세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 표준 계산

- 주택 : 주택, 오피스텔 등

-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

- 별도합산토지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인·허가받은 사업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계산

$$\begin{aligned}
 & \sum (\text{주택합산 공시가격} - \text{공제액}) \times \text{공정시장 가액비율} \\
 & \quad + \quad \sum (\text{합산토지 공시가격} - \text{공제액}) \times \text{공정시장 가액비율} \\
 & \quad + \quad \sum (\text{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 \text{공제액}) \times \text{공정시장 가액비율} \\
 & \quad \times \text{세율} \\
 & \text{재산세 상당액} - \text{세액 공제} = \text{종합부동산세 결정액}
 \end{aligned}$$

※ **공제액** : 주택분(9억원, 1주택자 12억), 종합합산토지(5억), 별도합산토지(80억)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토지 100%, 주택 시세, 지방재정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재산세 상당액 : 재산세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상당액
 = 유형별 재산세 상당액 = 재산세부과액 × (기준금액초과 공시가격합계 × 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재산가액 총합 × 재산세 표준세율)

세율 (2024)

주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3억원 이하	0.5%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0.7%	60만원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1%	240만원
12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1.3%	600만원
2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5%	1,100만원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2%	3,600만원
94억원 초과	2.7%	1억180만원
종합합산 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5억원 이하	1%	-
15억원 초과 ~ 45억원 이하	2%	1,500만원
45억원 초과	3%	6,000만원
별도합산 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00억원 이하	0.5%	-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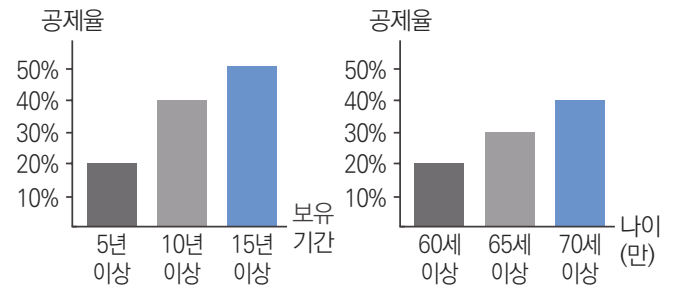
※ **주택** : 2주택 이하 소유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주택의 보유기간이 길수록, 보유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액 공제가 많아집니다. (중복적용가능 : 한도80%)

- **장기보유 공제**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 **고령자공제**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해당연도에 부과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전년도 경우와 비교하여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직전연도 총세액(재산세 + 종부세) × 150%] 초과하는 세액

농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 농지는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사망에 따라 물려받으면 상속세

상속세란?

사망에 의해 납세 의무가 성립하며,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제외하고 과세합니다.



상속공제 :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등), 기업상속공제(중소기업의 상속, 경영기간에 따라 300~ 600억원 한도), 배우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 **기초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기초적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 자녀와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상속세 계산

총상속재산 - 비과세재산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 공과금, 채무 등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상속세 결정액

세율(2024)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50%

영농상속공제

- 영농에 종사한 경우 영농상속재산은 30억원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농지, 초지, 축사 등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 ※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가능

잠깐!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등은 물론 영농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보다 많은 상속세를 줄여 줌으로써 원활한 영농상속을 지원합니다.

Q 강원도 횡성에 살고 전업농인 아버지는 어머니와 사별하고 집에서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2ha의 축사용지에서 20년간 젖소 180마리를 키우고 100평의 농지에서 채소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아버지가 '23년 6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고 5년째 전업농인 제가 상속받겠다고 할 때, 제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A 축사 등 소재지에서 30km 이내의 동일 군에 거주하며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고, 아들은 만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축사, 축사용지, 농지 가액에서 30억원까지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영농상속공제(최대 30억원)와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 인적공제 5천만원의 합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일괄공제)을 제하고 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증여세



살아생전 물려받으면 증여세

증여세란?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서 증여재산담보 채무 등을 차감하고 과세합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 - 채무부담액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 공제 등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 세액 공제 = 증여세 결정액

증여재산공제 : 인적공제(배우자가 증여한 경우 6억원, 직계 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등 10년간 : 누계한도액)를 적용합니다.

세율(2024)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50%

증여세 감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를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25년)

* 증여자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가능

잠깐!

사망에 의해 발생하는 상속과 달리, 자녀에게 농지 등을 빠르게 이전하여 영농인력의 세대교체를 지원합니다.

Q 전업농 아버지께서 30년간 직접 경작하던 집 근처의 농지 1ha를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딸인 저(30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제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얼마입니까?

A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하여 해당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도록 하는 경우 증여세가 100% 감면되어 딸의 납부 세액은 0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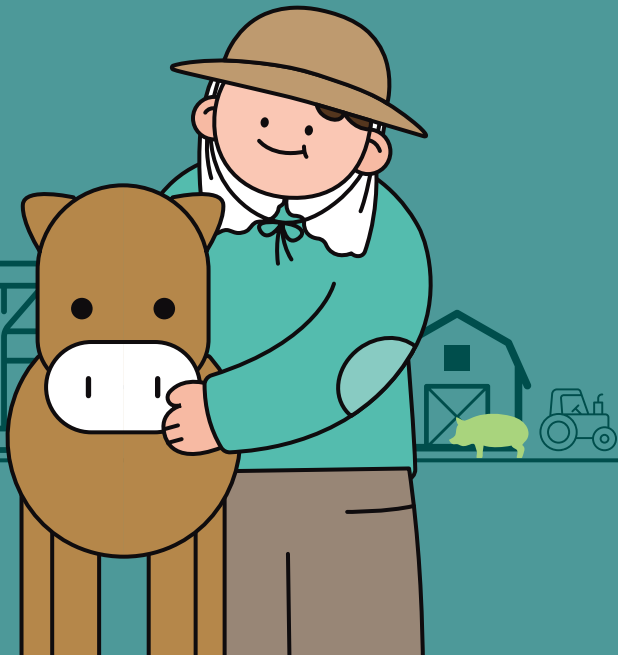
축사를 취득하고 면사무소에 신고한다면, 거래와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논농사를 지어온 박수만 씨는 이사하면서 신차를 장만하고 축산업을 시작해 볼 작정입니다. 그런데 지출계획을 세우던 중 예상 밖의 지출이 발생합니다. 어떤 지출 항목을 빠뜨렸을까요? 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의 세금을 간과하고 지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듯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구입하거나 등록하는데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세



취득하면 내는 세금

취득세란?

토지, 건축물 등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단, 국가·지자체 등의 취득, 신탁 등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는 비과세합니다.



토지 취득



주택 취득



건축물 취득



차량 취득

취득세 계산

$$\text{취득 당시 가액} \times \text{세율} = \text{취득세 결정액}$$

세율

구분	세율
부동산	1~4%
농지	2.3~3%
차량	2~7%
기타	2~3%

농업분야 취득세

농지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25년)
- 자경농민이 직접 농업에 사용하는 농지·축사·온실 등 취득세 50% 경감(~'26년)
- 귀농인이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경감(~'24년)



농업용 취득 부동산(농지 등)



농지 취득세 면제

Q 벼농사와 무농사를 겸하는 전업농입니다. 영농 규모 확대를 위해 농지 1천평을 1억원에 구입하려 하는데 이 때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얼마입니까?

A 자경농민이 직접 농업에 사용하는 농지이므로 1억원 × 세율 3%(유상취득시) = 3백만원의 산출세액에서 50% 경감된 150만원이 납부 세액입니다.

참고

영농에 필요한 농지와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농업활동을 시작하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

- 농업법인 설립 후 2년 내 취득하는 영농용 부동산 취득세 75% 경감(~'26년)
-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26년)

농협, 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

농업인의 영농을 지원하는 농협(조합, 중앙회 등),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각종 부동산과 시설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농협

- 농협중앙회 농민교육용 부동산 취득세 25% 경감(~'26년)
-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최소납부세제 대상) (~'26년)
- 농협 유통자회사 유통시설, 교육훈련시설 취득세 25% 경감 (~'26년)

- 농어촌공사

- 농업기반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25년)
- 농지규모화사업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25년)
- 경영회생사업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25년)
- 과원규모화사업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25년)
- 농지매입비축사업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25년)
- 생활환경정비사업 부동산 취득세 25% 경감(~'25년)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aT 유통시설, 교육훈련시설 취득세 50%경감(~'25년)

기타

- 농기계류·관정시설 취득세 면제(~'26년)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24년)
- 지방농수산물공사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 면제(최소납부세제 대상)(~'25년)

참고

최소납부세제: 취득세액 200만원,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전액 면제(100% 감면) 이더라도 면제세액의 15%를 부담

등록면허세



등록과 면허에 대한 수수료

등록면허세란?

등기·등록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등기·등록
(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
법인 등기 등)



면허·인가·허가
(음식점업 신고,
농지전용 허가 등)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과세합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계산

- 등록당시 가액 × 세율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결정액
- 세율
 - 부동산 등기 : 유형에 따라 0.2~2%(지상권·저당권 등 : 0.2%)
 - 선박 등기 : 소유권 보존 : 0.02%(그외 건당 15,000원)
 - 차량 등록 : 차종 및 등록유형에 따라 0.2~5%
 - 법인 등기 : 출자금액·재산가액 등의 0.1~0.4%(영리법인은 0.4%)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열, 검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을 받는 자에게 과세합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계산

- 인구 50만 이상 시, 기타 시, 군 별로 규모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하여 적용
- 세율

구분	인구 50만명 이상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 잠깐!

등록면허세는 행정청의 행정·관리업무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 강합니다.

농업분야 등록면허세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15년~)

- 전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에 대해 사육시설 면적에 따라 1~5종으로 나누어 매년 등록면허세 부과
- 행정청이 축산업 허가·등록제를 시행·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 개념으로 부과

Q 전북 정읍에서 990㎡의 축사에서 141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는 축산인입니다.
축산업 영위에 대해 '14년, '15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얼마입니까?

A 축산업은 '15년도부터 등록면허세 대상이므로 '14년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14.2월부터)이며 지방세법상 제4종 (사육시설 면적이 1천㎡ 미만), 인구 50만명 이상 시에 해당하므로 '15년 납부세액은 2만7천원입니다.
(이후 매년 납부)

농협

- 조합 합병 시 합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수받은 재산의 등록면허세 50% 경감(~'24년)
- 농협 용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경감(~'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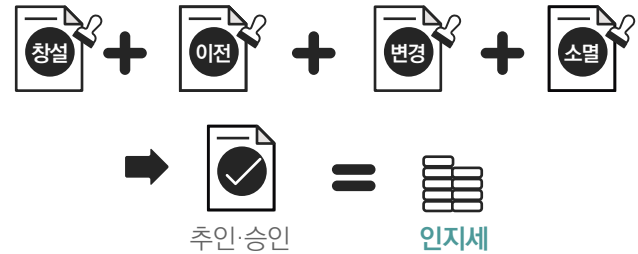
인지세



인지(印紙)에 대한 세금

인지세란?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율(2024)

- 부동산·선박·항공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등 : 기재금액별 2만~35만원
-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이 필요한 동산의 소유권 양도 증서 : 3천원
- 계속적·반복적 거래증서(신용카드 회원가입, 무선전화 가입 등) : 3백원
- 상품권, 선불카드 : 겉면에 표기된 금액별로 50원~8백원
- 주권, 채권, 출자증권, 수익증권, 기업어음 : 4백원
- 예적금 증서, 통장,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등 : 1백원
- 시설대여계약서 : 1만원
-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 사채보증 1만원, 신용보증기금 등 1천원, 농신보 등 2백원

농업분야 인지세

농협

- 농업인 용자, 예금에 따른 인지세 면제(~'26년)
-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용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 외상 구입 작성 서류 인지세 면제(~'26년)



농업인의
용자·예금



조합으로부터의
농촌주택개량자금
용자·외상서류



인지세
면제

농어촌공사

-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은행사업, 과원규모화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재산권 이전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26년)

※ **농지은행사업** : 이농 및 탈농하고자 하는 농가, 영세 농가나 고령 농가, 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 또는 도시민이 소유한 농지를 맡거나 매입하여 전업농에 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지관리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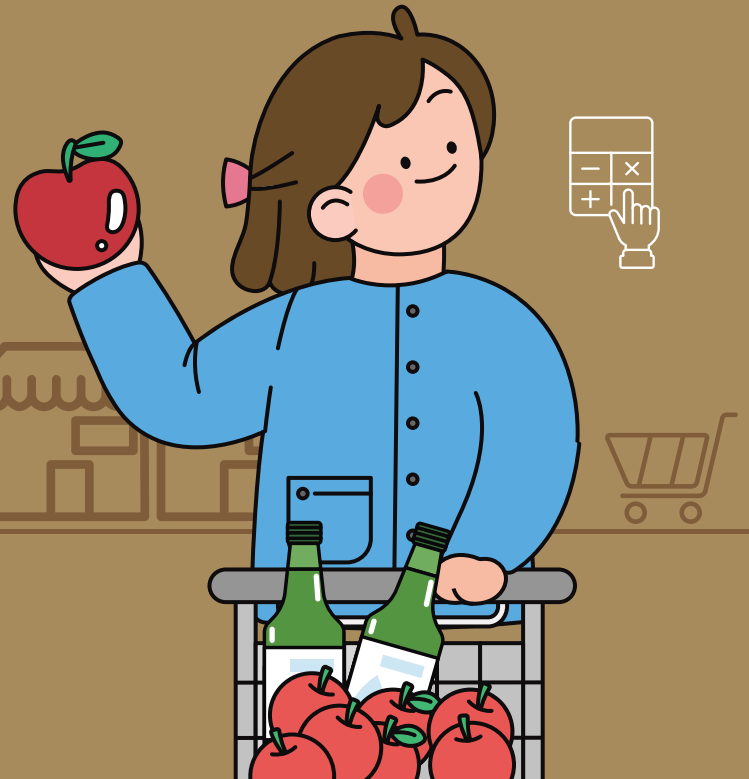
하우스 막걸리를 만들어서 판다면,

소비와 세금

부가가치세

주세

세화리 부녀회장 김은정 씨는 아유회때 먹을 과자와 사과 등 간식과 술을 12만원어치 구입하였습니다. 영수증을 보니 과자에는 부가가치세가 붙고 사과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영수증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술값에는 주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재화와 용역에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 붙고, 주류에는 주세가 부과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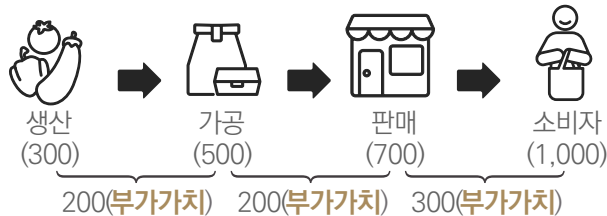
부가가치세



추가발생한 가치(이윤)에 부과하는 세금

부가가치세란?

물건과 서비스가 생산, 가공, 판매되는 모든 단계에서 추가로 생긴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비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계산

$$\text{공급가액(판매가격)} \times \text{세율(10\%)} = \text{소비자가격}$$

각 참여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계산

$$\underbrace{\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_{\text{매출세액}} - \underbrace{\text{매입가액} \times \text{세율, 의제매입세액}}_{\text{매입세액}} = \text{부가가치세 결정액}$$

즉, 매출액에 부과된 세액(매출세액)에서 원자재 매입 시에 부가되어 있던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만큼 납부하는 것입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인 농·축·수·임산물을 매입(구입)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세율(2024)

구분	과세표준	세율
일반과세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포함 안함)	10%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 × 10%

※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 기초생활 필수재화(농수산물 및 미가공식품, 수돗물), 국민후생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료보건, 교육 등), 문화 관련 재화(책, 신문 등), 금지금(순도가 99.5% 이상인 금) 등은 면제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원재료 구매(매입) 시 매입액에 포함되어 있던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역시 신고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i 잠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계산·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면세부분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는 있습니다.)

영세율

세율을 0%로 하는 것으로 매출세액은 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원자재 매입시에 낸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건설용역 등), 방위 산업물자,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은 부가가치세 면제와 동일하나, 영세율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매입세액 역시 신고해야 전액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일반적인 세율(10%)이 아닌 0%의 세율을 적용하되, 0%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계산·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금관련 제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일반택시운송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외국인 관광객 및 외국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텍스 리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



농업분야 부가가치세

농업분야 부가가치세 면제

- 농수산물 및 미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농수산물과 1차 가공(탈곡·제분·건조·냉동·염장 등)을 거친 식품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농업용 면세유(~'26년)

-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외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보유한 농기계를 농협 등에 신고·등록하면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협주유소 외 일반주유소에서도 가능)



- 기타

-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25년)
- 농업법인의 농업경영·농작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26년)
-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 정부업무 대행단체 : 농협(조합, 중앙회, 지주, 자회사), 농어촌공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단, 소매업·숙박업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외)
- 농협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일몰없음)·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6년)

농·축산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 (~'25년)

- 농기계 31종(콤바인, 파종기, 육묘상자 등), 축산용기자재 39종(사료 배합기, 축산분뇨제거기, 가축생체정보 수집기 등), 임업용기자재 15종(산불진화용 펌프, 톱밥제조기 등), 비료, 농약, 사료, 유기농어업 농자재 50종(키토산, 목초액, 천적 등)이 있습니다.



Q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입니다. 농협에서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농업용트랙터 5백만원, 퇴비 10만원 및 주방세제 5천원의 물품을 구입한 경우 (단, 물품가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임)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얼마입니까?

A 농업용트랙터와 퇴비는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업용 기자재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없으며, 주방세제는 과세 대상이므로 500원(5천원 × 세율 10%)의 부가가치세를 물품가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위 물품을 판매한 농협의 경우 농용트랙터와 퇴비의 판매 금액에 포함된 매출세액 0원 및 원자재의 구입금액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기자재 품목

농업기계

- | | |
|-----------------------|-----------------------|
| 1.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 16. 탈곡기 |
| 2. 농업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 17. 동력휴리스기 |
|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 18. 비료살포기 |
| 4.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 19.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
|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 | 20. 농산물 결속기 |
| 6. 고속분무기 (스피드스프레이어) | 21.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
| 7. 콤바인 | 22. 농산물 세척기 |
| 8. 곡물건조기 | 23. 동력심경기 |
| 9. 동력중경제초기 | 24. 동력구굴기 |
| 10. 동력수확기 | 25.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
| 11. 동력상토조제기 | 26.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
| 12. 정식기 | 2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
| 13. 농업용 난방기 | 28. 육묘상자 |
| 14.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 29. 파종기 |
| 15.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 30. 농업용 스프링클러 |
| | 31. 버섯재배소독기 |

유기농어업 기자재

1. 키토산(Chitosan)
2. 목초액
3. 천적
4. 약초 등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한다)
5.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6. 님(Neem) 추출물
7. 데리스(Derris) 추출물
8. 제충국 추출물
9.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한다)
10.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및 해조류 퇴적물
11. 버섯 추출액
12.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13.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Bentonite)
14. 규산나트륨

15. 규조토
16. 이탄(泥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및 토탄 추출물
17.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황산칼슘)
18.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19.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20.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펠라이트 및 제올라이트·일라이트 등)
21.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Molybdenum) 및 아연 등 미량원소
22.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23.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24.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25. 마그네슘 암석
26. 황산칼륨, 랑베나이트(Langbeinite : 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27.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28.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29.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30. 혈분·육분(고깃가루)·골분(뿔가루)·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31. 구아노(Guano :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32. 동·식물성 오일
33. 파라핀 오일
34.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35.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및 포도당을 포함한다.]
36.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37.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38. 황
39. 구리염
40. 산염화동
41. 밀납(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42.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43. 과망간산칼륨
44. 식초 등 천연산
45. 나무 숲 및 나뭇재
46. 에틸알콜
47. 인산철
48. 성 유인물질[페로몬(Pheromone)]
49. 인지질(Lecithin)
50. 카세인(Casein : 유단백질)

축산업용 기자재

- | | |
|---------------------------------|--|
| 1. 육추기 | 22. 싸이로 |
| 2. 양계용케이지 | 23. 사료저장탱크 |
| 3. 축산급이기 | 24. 축산분뇨제거기 |
| 4. 자동급수기 | 25. 축산용 정화조 |
| 5. 니플 | 26. 축산분뇨용 교반기 |
| 6. 부리절단기 | 27. 축산용 분뇨펌프 |
| 7. 포유기 | 28. 축산분뇨고액분리기 |
| 8. 양돈케이지 | 29. 축산분뇨발효건조기 |
| 9. 이표기 | 30. 축산분뇨살포기 |
| 10. 가축생체정보 수집기
(임신진단기를 포함한다) | 31. 축산분뇨저장탱크 |
| 11. 음수투약기 | 32. 축산분뇨포장기 |
| 12. 목책기 | 33. 산란상 |
| 13. 집란기 | 34. 난좌 |
| 14. 계란선별기 | 35.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
트재에 한함) |
| 15. 집란벨트 | 36. 사료통 |
| 16. 부화기 | 37. 벌통 |
| 17. 착유기 | 38. 채밀기(採蜜器) |
| 18. 원유냉각기 | 39. 소초(巢礎)세트[소초광
(巢礎筐)·사양기(飼養器)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
| 19. 사료배합기 | |
| 20. TMR배합기 | |
| 21. 사료절단기 | |

임업용 기자재

- | | |
|---------------------------------|-----------------------|
| 1. 임업용 동력천공기 | 8.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
| 2. 임업용 약제주입기 | 9. 타워야더(Tower yarder) |
| 3. 산불진화용 펌프(등짐펌프를
포함한다) | 10. 포워더(Forwarder) |
| 4. 임업용 동력기계톱(동력가지
절단기를 포함한다) | 11. 목재파쇄기 |
| 5. 임업용 원치 | 12. 톱밥제조기 |
| 6. 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 13. 동력임내차 |
| 7. 트랙터부착형 집재기 | 14. 밤수집기 |
| | 15. 자동지타기 |

농·축산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 농업인이 사용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품목** : 농업용필름, 인삼재배용 지주목,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동물용 의약품, 화훼재배용 배지, 축산업용 톱밥,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등 총 66종입니다.

• **환급 방법** : 농업인은 세금계산서, 농업인확인서를 구비하여 매 분기마다 농축협, 산림조합에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농업인(법인)은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 가능

i 잠깐!

농업인이 농기자재를 농업에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특례의 부정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영세율 품목보다 사후환급 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Q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입니다. 지난 10월 농협에서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농업용 필름을 10만원에 구입(단, 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한 경우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얼마입니까?

A 농업용 필름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이므로 구입 시 부가가치세 1만원을 물품가액에 더하여 총 11만원을 내고, 12월까지(매 분기) 농협에 농업인임을 증명하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청을 하여 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씨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으며, 물품을 판매한 농협은 매출세액 1만원과 원자재 구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던 매입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차액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농기자재 품목

1. 농업·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꽃이에 한정한다)
2.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임업용 포장상재(종이재질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채소·야생화·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임업용 부직포·다겹보온덮개·다겹보온커튼(작물·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임업용 배지[培地: 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 액체나 고체로, 양액(養液: 양분이 있는 액체를 말한다)·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에 한정한다)·이탄(泥炭)·토탄(土炭)·토탄 추출물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수실류·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임업용 양수기
14. 범씨밭이기
15. 동력배토기
16. 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 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용 필름
18. 화훼·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임업용 무인항공기
29. 농업·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임업용 굴착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임업·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마늘망·배추망·양배추망·옥수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 호스(점적 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60. 농업용 제습기
61. 농산물 건조기
62.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63. 개량 물꼬(논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64. 농업용 관비기
65. 농업용 양액기
66. 스마트팜 센서류(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약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구동기류(驅動機類)·복합환경제어기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음식점·제조업 등에 대해 농산물 구매금액의 일정 부분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합니다.



※ **공제율** : 개인음식점 8/108(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09(~'26년)), 법인음식점 6/106, 유흥주점 등 2/102, 제조업 4/104, 기타 2/102

- **공제한도(기본한도)**: 법인 30%, 개인사업자 40~50%

- **개인 음식점 사업자**: 1억원 이하 75%, 2억원 이하 70%, 2억원 초과 60%(~'25년)
- **개인 기타 사업자**: 2억원 이하 65%, 2억원 초과 55%(~'25년)
- **법인**: 과세표준의 50%(~'25년)

잠깐!

본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하는데, 농수산물을 원료로 매입하는 경우 농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제조업자는 매출세액을 그대로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자신이 생산한 부가가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운영합니다.

Q 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3년 7월 농업인 김씨로부터 쌀과 배추 등 농수산물을 109만원에 구입하여 식당에서 사용하고 '23년 하반기 6개월간 매출액이 1천만원인 경우, '23년 하반기 매출에 대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얼마입니까?

A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농산물 구입액 109만원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9/109(개인음식점) = 9만원을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세액 100만원 (=매출액×10%)에서 의제매입세액 9만원을 뺀 91만원이 납부세액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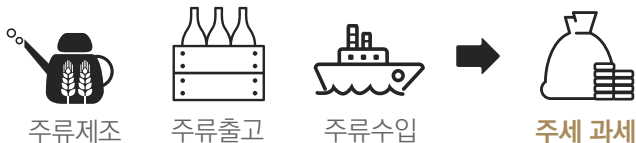
주세



술에 대한 세금

주세란?

주류를 제조·출고하거나 수입할 경우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주류의 종류 : 주정(에틸 알코올),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등), 기타 주류

※ **주정** : 희석해서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주세 계산

(주정, 탁주, 맥주) 출고수량
(그외 주류) 출고 가격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text{주세 결정액}$$

세율(2024)

구분	세율
주정	1키당 57,000원
발효주류	탁주 1키당 44,400원, 약주·청주·과실주 30%, 맥주 1키당 885,700원, 생맥주의 경우 2026년까지 708,500원 * 맥주, 탁주는 30% 범위 내 탄력세율 적용 가능
증류주류	72%

면세

수출하는 것, 주한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것, 해외여행 후 직접 들여와 관세가 면제된 것 등은 주세가 면제됩니다.

농업분야 주세

농업분야 저율 과세

일정 수량의 전통주는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 전년도 발효주류 500kl, 증류주류 250kl 이하 생산자 및 신규 면허자는 발효주류 200kl, 증류주류 100kl에 대해 50% 감면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Q 가업으로 전해오는 전통주를 매년 탁주 50kl, 청주 50kl 조제하고 있습니다. 청주 50kl를 5억원의 출고가로 판매한 경우 납부해야 할 주세 총액은 얼마입니까?

A 탁주, 청주는 발효주이므로 200kl까지 저율과세 되어, 탁주 (50 x 44,400원 x 50%) = 1,110,000원, 청주 (5억원 x 30% x 50%) = 7,500,000원으로 총 8,610,000원이 납부 세액이 됩니다.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소규모 탁주, 약주 및 청주 제조자는 소규모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 제조장 시설기준보다 완화된 시설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자기영업장 및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 약주 및 청주 1kl 이상 5kl 미만 제조자는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X (출고수량 기준 5kl 이하 60%, 5kl 초과 80%)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탁주 제조자는 출고수량 기준(5kl 이하 60%, 5kl초과 80%)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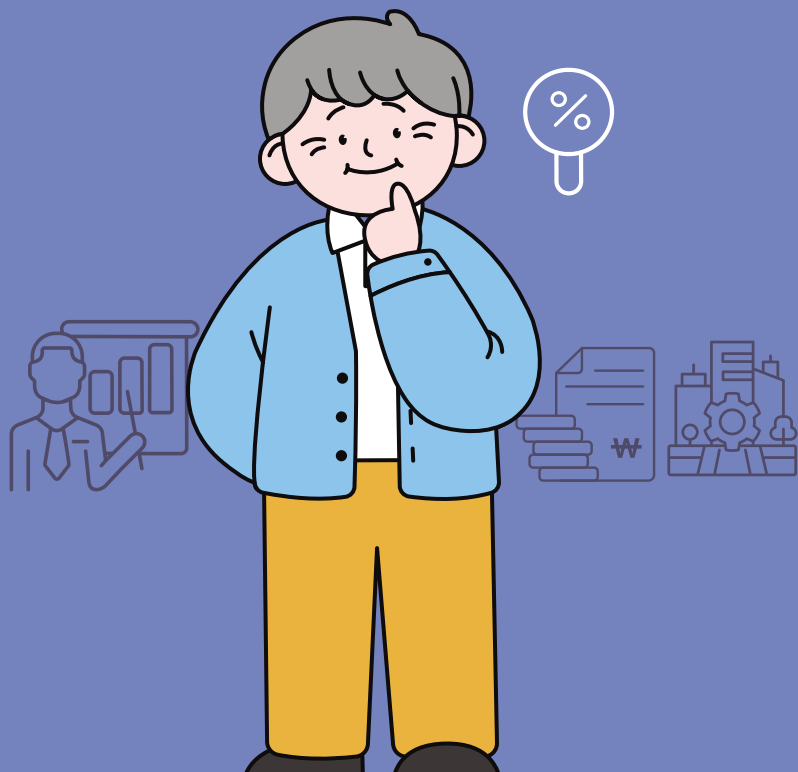
그 밖의 세금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농업인 민영훈 씨는 농사와 주식투자를 겸하고 있으며, 비농지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도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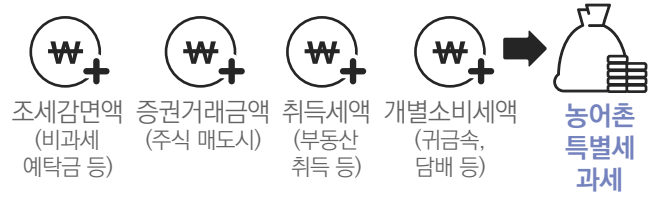
이때 민영훈 씨가 내는 증권거래금액과 종합부동산세의 일정한 세율은 농어촌특별세로 쓰여 농어촌 개발에 기여하게 됩니다. 반면 농업인인 민영훈 씨의 주민세는 비과세 되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듯 농어촌특별세와 비과세되는 주민세는 농업인 가계와 농어촌 지역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업인을 지원하는 세금

농어촌특별세란?

농업·농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입니다.(1994.7.1~2034.6.30) 조세감면액, 증권거래금액, 취득세액 등에 부가하여 과세합니다.



세율(2024)	
• 조세감면액 : 10~20%	•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 : 20%
• 저축감면 : 10%	• 레저세액 : 20%
• 증권거래금액 : 0.15%	• 개별소비세액 : 10~30%
• 취득세액 : 10%(농지 취득 등 제외)	

※ 국가·지자체·중소기업에 주었던 감면에 대한 농특세 등은 비과세합니다.

농업분야 농어촌특별세

농업인·농협·농업법인 조세 감면에 대한 농특세를 비과세합니다.

주민세



개인과 법인이 지자체에 내는 세금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소를 둔 법인



주민세 과세

- **개인분** : 개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합니다.
- **사업소분** :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합니다.(개인·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따라 부과합니다.

세율(2024)

구분	세율
개인분	1만원 이하(조례로 지정)
사업소분	기본세액(5~20만원)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농업분야 주민세

농업인이 영농·영림·가축사육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액제외) 및 종업원분은 면제합니다.(~'24년)

발행처	농림축산식품부
초판발행	2016년 3월
9판인쇄	2024년 3월
기획·제작	농업경영정책과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2287-10
누리집주소	http://agritax.imweb.me

※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